

市町村役場にて
住居地の(変更)届出
・新たに来日された方

日本に3か月を超えて住む予定の外国人は、入国後、住居地を定めてから14日以内に自分が居住することになる市町村役場の窓口へ在留カードを持参し、住民登録の手続きをしてください。

*パスポートに「在留カードを後日交付する」と記載がされた方は、パスポートを持参してください。

・住所が変わったとき

引っ越しするときは、古い住居地の市町村役場に転出届をし、転出証明書をお願い、在留カードを持参の上、新しい住居地の市町村役場に14日以内に転入届をし、在留カードの裏面に住所の記載をしても構いません。外国に帰国するときも転出届は必要です。

市町村 事務所で

주거지 (변경) 신고

・새롭게 일본에 오신 분

일본에 3 개월이상 거주할 예정인 외국인은 입국 후,주거지를 결정하고난 뒤 14 일 이내에 자신이 거주할 시정촌 사무소에 체류카드를 가지고 가셔서 주민 등록절차를 밟으십시오.

* 여권에 ‘체류카드를 후일 교부함’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분은 여권을 지참해 주십시오.

・주소가 바뀌었을 때

이사할 때는 이전에 살았던 주거지의 시정촌 사무소에 전출 신고를 하고 전출 증명서를 받아서 체류 카드를 지참하여 새로운 주거지의 시정촌 사무소에 14 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한 뒤, 체류 카드의 뒷면에 주소기입을 받습니다.

외국에 귀국할 때에도 전출신고가 필요합니다.

マイナンバー制度

住民票のある外国人(中长期在留者、特別永住者など)には、マイナンバーと呼ばれる12桁の個人番号が市町村から通知されます。この個人番号は、社会保障や税、災害安否などに活用されます。

<http://www.cas.go.jp/jp/seisaku/bangoseido/>

結婚をしたとき(婚姻届)

日本で結婚(婚姻)を届け出る場合には、下記の書類が必要です。

詳しいことは、事前に各市町村役場担当課および本国の大使館・領事館に問い合わせてください。

日本人と結婚して、「日本人の配偶者」に在留資格を変更したいとき、または、永住者や定住者と結婚したときは、入国管理局(出張所)に相談してください。

【必要書類】市町村役場に提出①②

- ① 婚姻届(用紙は市町村役場にありません)
- ② 婚姻要件具備証明書(婚約者が独身であり、自国の法律で結婚できる条件を備えているということを相手国政府が証明した公的文書)またはそれに代わる文書
- ③ 日本人配偶者の戸籍謄本(本籍地以外の時)
- ④ パスポート

* 必要な書類については、市町村役場に確認してください。

개인 번호 제도

주민표가 있는 외국인(중장기 체류자, 특별 영주자 등)에게는 마이 넘버라고 불리는 12 자리의 개인 번호가 시정촌으로부터 통지됩니다. 이 개인번호는 사회보장이나 세금, 재해 안부 등에 활용됩니다.



결혼했을 때 (혼인신고)

외국인이 일본에서 결혼(혼인)을 신고할 경우는 아래의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각 시정촌 사무소 담당 및 본국의 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일본인과 결혼하여 「일본인 배우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영주자나 정주자와 결혼할 경우는 입국관리국(출장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필요한 서류】

시정촌 사무소에 제출①②

- ① 혼인신고서
(시정촌 사무소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
- ② 혼인요건 구비증명서
(결혼할 상대방이 독신이며 자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상대방 정부가 증명하는 공식 문서) 또는 그것을 대신하는 문서
- ③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 등본
(본적지 이외의 경우)

④ 여권
*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시정촌 사무소에 확인해 주십시오.

離婚をしたとき（離婚届）

夫婦のどちらかが日本人の場合、夫婦とも

に同意すれば、離婚することができます。

下記の書類を持って、居住地の市町村役場

に離婚の届出をしてください。

夫婦双方が外国人の離婚については、居住

条件によって届出することができない

場合がありますので、詳しくは、それぞれ

の大使館または領事館と居住地の市町村

役場に問い合わせてください。

【必要書類】

・離婚届（用紙は市町村役場にあります）

・日本人配偶者の戸籍謄本

・日本人配偶者の住民票

・パスポート

・在留カード

* 必要な書類については、市町村役場に

確認してください。

이혼했을 때 (이혼신고)

부부 어느 한 쪽이 일본인인 경우, 부부

양쪽이 함께 동의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거

주지의 시정촌 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해

주십시오.

부부 양쪽이 다 외국인인 경우는 거주

조건에 따라 신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각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및 거주지의 시정촌

사무소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필요한 서류】

・이혼신고서

(시정촌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일본인 배우자의 주민표

・여권

・체류 카드

*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시정촌

사무소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亡くなったとき（死亡届）

日本に住む外国人が日本国内で死亡したと

きは、死亡の事実を知った日から7日以内

（国外で死亡したときは、その事実を

知った日から3か月以内）に、同居者や親族

が死亡した所か住所地の市町村役場に

死亡届を出してください。在留カードは

入国管理局に返納してください。死亡の際

には、本国政府にも報告してください。手続

の方法は、大使館・領事館に問い合わせ

てください。

【提出書類】

・死亡届書（役所又は病院にあります）

・死亡診断書（死亡時に、死亡届書に医師

の証明を受けたもの）

・届出人の印鑑（又は署名でも可）

いずれの場合も、市町村によって、提出

書類や取り扱い方法が異なります。詳しくは、市町村役場の担当課に問

ひ合わせてください。

사망했을 때 (사망신고)

일본에 사는 외국인이 일본 국내에서

사망했을 때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7 일 이내 (국외에서 사망했을 때는 그

사실을 알았던 날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동거자와 친족이 사망한 곳이나 주소지의

시정촌 사무소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체류카드는 입국관리국에

반납해 주십시오. 사망했을 때는 본국

정부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수속 방법은

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제출서류】

・사망신고서

(관공서 또는 병원에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사망 시에 사망신고서에

의사의 증명을 받은 것)

・신고인의 인감 (서명도 가능함)

위의 신고에 관해서는 시정촌별로

제출서류와 취급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정촌 사무소

담당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妊娠したとき

母子健康手帳(親子手帳)

妊娠がわかったら、住所地届出をしている市町村役場に妊娠届を出すと母子健康手帳(親子手帳)がもらえます。

この手帳は、妊娠・出産の状態、生まれた子供の発育の経過など、母子の健康状態を詳しく記載しておくもので、出産から就学までの子供の健康記録となります。

また、(公財)母子衛生研究会が、英語、中国語、ハングル、タイ語、タガログ語、ポルトガル語、スペイン語、インドネシア語の母子健康手帳(日本語と併記)を発行しており、送料・手数料を添えて郵送で入手するほか、一般書店を通じて取り寄せが可能です。(各手帳820円)

詳しくは、市町村役場担当課、保健所に問い合わせてください。

妊婦・乳幼児の健康診査

母子健康手帳(親子手帳)交付時に、妊娠中の無料健康診査のための受診票がもらえます。岡山市の場合、妊娠中に14回、岡山県内の医療機関(事前申請により、全国の医療機関)で受診できます。また、出産後の乳幼児についても健康診査の補助があります。通常、医療機関には通訳はいないので、日本語のできる人と一緒に受診してください。

임신을 했을 때

모자건강수첩(오야코수첩)

임신했을 경우는 주거지 신고가 된 시정촌 사무소에 임신신고서를 제출하면 모자건강수첩(오야코수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첩은 임신·출산의 상태, 태어난 아기의 발육 경과 등, 모자의 건강상태를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으로 출산부터 취학까지 아기의 건강기록이 됩니다.

또한, (공익재단) 모자위생연구회가 영어, 중국어, 한국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로 모자건강수첩(일본어 병기)을 발행하고 있어, 우송료와 수수료로 지불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서점을 통해서 주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 수첩 820 엔)

자세한 사항은 시정촌 사무소의 담당과 및 보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임부·영유아의 건강진단

모자건강수첩(오야코수첩) 교부시에 임신 중의 무료건강진단을 위한 진찰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카야마시의 경우 오카야마현내의 의료기관에서 임신 기간 중 14 회의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전에 신청할 경우는 전국의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함) 또한, 출산 후 영유아에게도 건강진단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보통 의료기관에는 통역사가 없으므로 일본어가 가능한 분과 함께 가서서 진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子どもが生まれたとき(出生届)

日本に居住する外国人が日本国内で出産したときは届出が必要です。

子どもが出生した日から14日以内に、生まれた所(住所) 또는 본국(本籍地)의市町村役場に父親(又は母親)가届けてください. 另外, 住居地届出(在留資格申請)の手続きも行ってください.

また、本国政府にも報告が必要です. 手続の方法は、大使館・領事館に問い合わせてください.

ださい.

【提出書類】

- 出生届書(役所又は病院などに備えている場合もあります)
- 出生証明書(出産したとき、出産届書に医師又は助産婦の証明を受けたもの)
- 届出人の印鑑(又は署名でも可)
- 母子健康手帳
- 国民健康保険証(加入者のみ)

자녀가 태어났을 때(출생신고)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일본 국내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태어난 곳이나 주소지 (또는 본적지)의 시정촌 사무소에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신고해 주십시오. 또한 거주지신고와 체류자격 신청수속도 해 주십시오.

또한 본국 정부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속방법은 대사관 · 영사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 (관공서 또는 병원 등에 준비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출생증명서 (출산했을 때, 출산신고서에 의사 또는 조산사의 증명을 받은 것)
- 신고인의 인감 (서명도 가능함)
- 모자건강수첩
- 국민건강보험증 (가입자에 한함)

その他の市町村役場での手続き

国民健康保険

これは、病気やけがを^{びょうき やけが}をして医療機関^{いりょうきかん}にかかったときに支払^{しはら}わなければならない医療費^{いりょうひ}の70% (70歳以上^{さいいじょう}の一部^{いちぶ}の方は80%) ^{かた}を支払^{しはら}ってくれる保険制度^{ほけんせいど}です。出産時^{しゅつさんじ}や死亡^{しぼう}時^じなどにも、さまざまな給付^{きゅうふ}があります。

加入^{かにゆう}の手続^{てつづき}は、住居地届出^{じゅうきょちとけで}をしている市町村役場^{しちょうそんやくば}でします。加入後^{かにゆうご}には、国民健康保険証^{こくみんけんこうほけんしやう}が発行^{はつこう}されるので、医者^{いしや}にかかるときは必ず持参^{かんなら じさん}し、病院^{びょういん}の窓口^{まどぐち}で提示^{ていじ}してください。(参考「医療機関を受診するとき」p.72)

在留期間^{ざいりゅうきかん}が3か月^{げつ こ}を超える人^{ひと}は、国民健康保険^{こくみんけんこうほけん}に加入^{かにゆう}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ただし、職場^{しょくば}の健康保険等^{けんこうほけんとう}の加入者^{かにゆうしや}、生活保護^{せいかつほご}受給者^{じゅききやうしや}、短期滞在^{たんきたいざい}、外交^{がいこう}のビザ^{びざ}を持つ人^{ひと}および特定活動^{とくていいかつどう}のビザ^{びざ}を持つ人^{ひと}のうち、医療^{いりやう}をうける活動^{かつどう}又はその活動^{かつどう}を行う人^{おこな}の日常生活上^{にちじようせいかつじよう}の世話^{せわ}をする目的^{もくてき}で入国^{にゅうこく}する人^{ひと}は加入^{かにゆう}できません。また市外^{しがい}へ転出^{てんしゅつ}したときも国民健康保険^{こくみんけんこうほけん}の資格^{しかく}を失^{うしな}います。

加入^{かにゆう}できない条件^{じようけん}に該当^{がいとう}したときは速やか^{すみ}に、加入^{かにゆう}をした市町村役場^{しちょうそんやくば}へ資格^{しかく}喪失^{そうしつ}の届出^{とどけで}をしてください。

保険料^{ほけんりやう}は、所得^{しやうとく}と世帯^{せたい}の人数^{にんずう}に応じて、世帯単位^{せたいたんい}で算定^{さんてい}されます。詳しくは、市町村役場^{しちょうそんやくば}の担当課^{たんとうか}に聞いてください。

그 외의 시정촌 사무소에서의 수속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병이나 부상을 입어 의료기관에 갔을 때, 지불해야 할 의료비의 70% (70 세 이상 일부 사람은 80 %) 를 지불해 주는 보험제도입니다. 출산 시 및 사망 시 등에도 다양한 지급이 있습니다. 가입 수속은 거주지 신청을 한 시정촌 사무소에서 합니다. 가입 후에는 국민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병원을 찾을 때는 꼭 지참하고 병원 접수처에 제시해 주십시오.

(참고) p.72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때」

거주지신청을 하고 체류기간이 3 개월을 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직장건강보험 등에 가입자, 생활보호 수급자, 단기 체재, 외교 비자 취득자, 특정 활동 비자 취득자중에 의료를 받고 있는 활동 또는 그 활동을 하는 사람의 생활상의 돌봄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가입하지 못합니다. 또한 시외로 전출을 했을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가입하지 못한 조건에 해당했을 때는 신속하게 가입을 한 시정촌 동사무소에 자격 상실 신청해 주십시오.

보험료는 소득과 세대의 인원^{인원}에 따라 세대 단위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것은 시정촌 사무소의 담당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国民年金

年^{とし}をとって働^{はたら}けなくなったときや、病氣^{びょうき}やけがで障害者^{しょうがいしや}になったときなどに、年金^{ねんきん}や一時金^{いちじきん}を支給^{しきゆう}して生活^{せいかつ}を支^{ささ}える社会保障^{しゃかいほしょう}制度^{せいど}です。日本国内^{にほんこくない}に居住^{きょじゆう}する20歳^{さい}~59歳^{さい}の人は、国籍^{こくせき}に関わらず、必ず国民年金^{こくみんねんきん}に加入^{かにゆう}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国民年金^{こくみんねんきん}に加入^{かにゆう}するには、住居地届出^{じゅうきょちとけで}をしている市町村役場^{しちょうそんやくば}へ届出^{とどけで}をします。勤務先^{こうむき}で厚生年金^{こうせいねんきん}や共済組合^{きやうさいくみあい}に加入^{かにゆう}した人は、届出^{とど}ける必要^{ひつよう}はありません。

国民年金^{こくみんねんきん}に加入^{かにゆう}すると「基礎年金番号^{きそねんきんばんごう}通知書^{つうちしょ}」が交付^{かうふ}されます。加入後^{かにゆうご}は毎月^{まいづき}保険料^{ほけんりやう}を納^{おさ}めることになります。保険料^{ほけんりやう}は、16,590円^{えん} (令和4年4月現在^{れいわねん がつげんざい}) です。

国民年金^{こくみんねんきん}・厚生年金^{こうせいねんきん}には脱退一時金^{だつたいいちじきん}支給^{しきゆう}制度^{せいど}があります。外国人^{がいこくじん}が日本滞在^{にほんたいざいちゆう}中に年金^{ねんきん}に加入^{かにゆう}し、保険料^{ほけんりやう}を6か月以上納^かめた場合^{ばあい}、帰国後^{きこくご}2年以内^{ねんい}に所定^{しよてい}の手続^{てつづ}きに從^{したが}って請求^{せいききゆう}すれば脱退一時金^{だつたいいちじきん}が支給^{しきゆう}される制度^{せいど}です。

詳しくは、最寄^{もよ}りの年金事務所^{ねんきんじむしょ}か市町村役場^{しちょうそんやくば}の担当課^{たんとうか}に聞いてください。

국민연금

나이가 들어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나, 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여 생활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20~59 세의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는 거주지신청을 한 시정촌 사무소에 신고합니다. 근무처에서 후생연금과 공제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번호

통지서」이 교부됩니다. 가입 후, 매월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보험료는 16,590 엔

(2022 년 4 월현재)입니다. 국민연금,

후생연금에는 탈퇴 일시금 지급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일본 체재 중에 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6 개월 이상 낸 경우 귀국 후, 2 년 이내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 청구하면 탈퇴 일시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연금사무소나 시정촌 사무소의 담당과에 문의해 주십시오.